

##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사유

-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 1. 1부터 도입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채택되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 나.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감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관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를 “200명으로”조정(안 제2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현재 20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그 뜻은 연서를 받을 수 있는 총 인원이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하한선이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데,
- 조례안 제2조를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를 “.....200명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방자치법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위 제2조만 읽어볼때 연서를 받아야 주민수가 정확히 200명 이어야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 법의 개정취지도 쉽게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상한선 200명을 고수하는 것보다 인원수를 낮추어서 하한선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 “.....150명이상으로 한다” 또는 “.....최소 150명으로 한다”등으로 수정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 생각됨.

2005. 12.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